

석유화학부산물 관련 석유사업법령 개정 건의

- 대한석유협회 -

이 내용은 지난 5월 23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편집자주>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80(2000.5.20)호에 의한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와 관련임. 이 건의는 재정경제부및 국세청에도 제출하였슴.

건의배경

○ 일부 석유화학업체에서는 석유 화학 제조공정중 생산되는 C9+, Heavy End 등 석유화학부산물을 산업체 뿐만 아니라 호텔, 스키장, 콘도 등에 등유 대체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등 부산물은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포함되지 있지 않아, 석유사업법령에 의한 품질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석유제품은 그 특성상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생활의 안전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으로써 석유화학사의 석유화학부산물 유통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됨.

- 또한 석유화학부산물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부과금 및 세금이 면제되어 등유보다 월등히 싼 가격으로 유통됨으로써, 기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석유판매업자에게 큰 타격이 돌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주유소에서는 중간에서 소개비를 받고 이러한 부산물을 판매알선하고 있다는 사례마저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석유화학부산물 관련 석유사업법개정 필요성

그 동안 폐업계는 석유화학부산물 일반판매가 소비자 피해를 도외시한 행위이자 조세 형평차원에서 부당한 행위이므로 시급히 법령을 정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주시기를 여러차례 귀부에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주유소업계 등 석유판매업계에서도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다행히 금년 초 귀부에서 부산물 일반판매의 심각성을 주시하고 부산물에 대해 석유제품과 동일한 의무 부과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사에서 부산물 일반판매를 다소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금번 입법예고안에 석유화학부산물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또 다시 석유유통시장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

더구나, 석유화학부산물 일반판매의 심각성은 석유화학업계의 자제나 폐업계와의 인수합의 등으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선 것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 석유유통질서 확립 및 조세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법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정비될 사안이라 사료됨.

○ 이에, 폐업계는 금번 석유사업법령 개정시, 석유제품 대체용으로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C9+, Heavy End 등 석유화학부산물을 석유제품에 포함시켜, 석유제품과 동일한 품질기준, 납세의무 및 비축의무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길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석유제품과 석유화학부산물간 비교

	석유제품 (보일러등유)	석유화학부산물 (C9+,HeavyEnd)
공급주체	정유사	석유화학사
용도	가정용보일러 산업용보일러 건물용보일러 중소산업용보일러	좌동
품질규격	석유사업법에규정	없음
품질검사	석유사업법상품검사 대상유종	없음
각종세금		
-특소세	60원/ l	
-교육세	9원/ l	없음
-부과금	20원/ l	
비축의무	38일	없음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별첨 1>

개 정(안)	검 토 의 건	사 유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p> <p>(용제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연료유</p>	<p>대체연료유를 석유제품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존 석유제품과 별도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기 위함.</p>
<p>7. "특수판매소"라 함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판매업소외의 판매업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p>	<p>8.-----</p> <p>제7호-----</p>	<p>-C9, Heavy end 등 석유화학 부산물중 석유제품과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물질들을 석유제품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함.</p>
<p><신설></p> <p>제3조(탄화수소유등)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p>1.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이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p>	<p>9. "대체연료유"라 함은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탄화수소유중 휘발유·등유·경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산물의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소비하거나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자에게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때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본다.</p> <p>제 3 조 (탄 화 수 소 유 등)</p> <p>법-----</p>	<p>-C9, Heavy end 등 석유화학 부산물중 석유제품과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물질들을 석유제품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함.</p> <p>-석유화학 부산물중 석유제품과 대체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물질들을 석유제품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함.</p>

<별첨 1>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개 정(안)	검 토 의 견	사 유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부과금징수대상 석유 및 그 부과기준 1. (생략)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가. (생략) 나. <u>등유</u> : 1리터당 20원	제 24조 (부 과 금 의 부과 기준)----- ----- ----- ----- ----- [별표 3] 부과금징수대상 석유 및 그 부과기준 1. (생략)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가. (생략) 나. 등유 및 대체연료유 : 1리터당 20	- 등유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대체연료유 추가

<별첨 2>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개 정(안)	검 토 의 견	사 유
<신설> 제9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1조의3(대체연료유) 영 제2조제9호에서 "산업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류정상상 90% 유출온도가 175℃ 내지 285℃인 탄화수소 유를 말한다. 제9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등) ① ~ ④ (생략) 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종 대 체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석유판매업(대체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직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지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 치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치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시행령 제 2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연료 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대체연료판매소의 등록절차 신설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별첨 2>

개 정(안)	검 토 의 견	사 유
<p>⑤ <생략></p> <p>⑩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허가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등록대장·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향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등록증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축대상석유제품) 영 제21조제1호에서 원본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p>1.~7. (생략)</p> <p><신설></p> <p>제22조(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련별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유·경유·용제·중유·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경제광유 함유량이 100분의 70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p> <p>1.·2. (생략)</p>	<p>⑥ <삭동></p> <p>⑦ ----- <u>용제판매소·대체연료유 판매소</u> ----- 제15조 (비축대상석유제품) ----- <u>제21조 각호</u> ----- ----- 1.~7. (생략) 8. 대체연료유</p>	<p>- 대체연료판매소신설 및 이동판매소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p> <p>- 대체연료를 석유제품에 포함시킴에 따라 타 석유제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연료를 비축대상 석유제품에 포함.</p> <p>- 대체연료유의 신설에 따라 품질검사 대상에 추가</p>